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35
----------	-------

발의연월일 : 2026. 9. 29.

발 의 자 : 임미애·문대림·권향엽
백승아·김 윤·김준혁
김정호·신정훈·임오경
이연희·이언주·조승래
손 솔·이재관·조인철
임호선·문금주·송옥주
김한규·윤준병·이광희
김주영 의원(22인)

제안이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매년 약 300명의 농업인이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입어 농업 분야의 사망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 대다수는 1인 자영농 및 가족농으로 구성되어 현행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공식 산업재해 통계에서조차 누락되는 등 재해 예방 정책의 구조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농업은 농업기계의 사용, 야외 작업, 농약·분진 등 유해물질의 취급, 추락·끼임·질식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

전·보건 관리가 절실함. 더욱이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으로 농업기계 이용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 새로운 위험요인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사후 보상 위주의 보험에 치중되어 있고, 예방 관련 규정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농작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책임 기반의 사전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재해통계와 실태조사, 재해원인조사 및 질병 역학조사, 안전·보건기술의 연구개발, 현장 기술보급, 농작업 환경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작업, 농업인, 농업경영주, 농업근로자, 기타 농작업자 및 농작업 재해 등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작업재해 예방 시책의 수립 등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농업인 등의 협조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작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시·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시행계획 및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하여 농작업재해예방위원회를 두고, 기관 간 정책 연계·협력을 위하여 중앙·지역 예방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농작업재해 통계의 수집·관리, 2년 주기의 실태조사, 재해원인조사·역학조사 및 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농작업재해 예방 정책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농촌진흥청장의 예방지도·기술보급에 관한 사업의 추진, 예방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예방관리기준의 마련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농업경영주의 자율 안전점검,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농업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정보 제공 책무를 규정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화된 안전·보건표지 등의 제작·보급과 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지도,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아. 농작업재해 예방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농업인안전보건센터의

운영·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설치, 현장 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업재해 예방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농작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권한 및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작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며, 나아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주”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5. “농업근로자”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기타 농작업자”란 농업경영주 및 농업근로자 외에 농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농업인 등”이란 농업경영주, 농업근로자 및 기타 농작업자를 말한다.

8. “농작업재해”란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등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9. “농작업재해 예방”이란 농작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인 등의 안전·보건 증진 및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작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 등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등의 안전·보건 증진 및 농작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조성, 조사·연구 실시, 예방사업 추진, 안전문화 진흥
3. 농업인 등의 안전·보건 증진 및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

직 또는 전문인력의 확보

4. 농작업재해 조기발견·대응, 신체·심리적 회복 및 작업복귀 지원

5. 그 밖에 농업인 등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인 등의 의무) 농업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및 정보체계구축

제6조(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작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작업재해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2. 농작업재해 예방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항

4. 그 밖에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농작업재해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하거나 변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작업재해 예방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작업재해예방위원회) ① 농업인 등의 안전·보건 증진 및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작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작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 정책의 기획 및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농작업재해예방협의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유관 기관·단체 등과의 정책 연계 및 자문을 위하여 중앙 농작업재해예방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농작업재해 예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 농작업재해예방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협의한다.

1. 농작업재해 예방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2. 농작업재해 예방 시책 개선 및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방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중앙 농작업재해 예방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 농작업재해 예방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통계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의 안전·보건 증진 및 농작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작업재해 및 안전·보건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고 통계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업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계자료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해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업재해 발생 원인의 규명 및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농작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사항과 자료에 대한 수집·조사(이하 “재해원인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의 업무상 질병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원인조사와 역학조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재해원인조사와 역학조사의 대상·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업재해 예방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처리한 농업인 등의 안전·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공유할 수 있다.

④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제13조(예방 기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업재해 예방사업이 농업정책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개발사업)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작업 또는 농작업이 수행되는 장소와 환경으로 인해 농업인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 및 기준의 수립에 관한 연구
2. 농작업재해 현황 통계, 재해원인조사, 역학조사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에 관한 연구
3. 농업기계·기구·자재 등의 안전성 증진, 농작업 환경 개선, 안전·편의장비 개발 등 농작업재해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관한 연구
4.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업재해 예방 방안에 관한 연구
5. 농작업재해의 조기 발견·대응, 신체·심리적 회복 및 작업 복귀에 관한 연구
6. 농작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8. 그 밖에 농업인 등의 안전·보건 증진 및 농작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작업재해 예방지도·기술보급사업)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의 안전·보건 증진과 농작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지도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작업 현장의 안전점검 및 개선 방안의 수립·이행에 대한 지도·보급
2. 농업기계·기구·설비·자재 등의 안전 증진 기술의 지도·보급
3. 농작업 현장·시설 등의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의 지도·보급
4. 폭염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농작업재해 예방 기술의 지도·보급
5. 농업인 등의 신체 부담 및 위험 경감을 위한 안전·편의장비 및 개인보호구의 지도·보급
6. 농작업재해의 조기 발견·대응, 신체·심리적 회복 및 작업 복귀에 관한 지도 및 기술 보급
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의 지도·보급
8.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및 선도농업인 등의 협력을 통한 안전·보건 기술의 지도·보급
9. 그 밖에 농업인 등의 안전·보건 증진 및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농작업재해 예방지도·기술보급사업의 추진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작업재해 예방교육)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이 농작업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 농작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제1항에 따른 농작업재해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작업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농작업재해 예방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2. 농작업재해 예방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3. 농작업재해 예방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4. 그 밖에 농작업재해 예방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농작업재해 예방관리기준)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작업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등에 관한 예방관리기준(이하 “예방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예방관리기준을 마련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농작업재해 예방관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③ 예방관리기준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농작업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 개선조치 등) ① 농업경영주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작업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경영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 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농업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현장 안전점검 및 개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농작업 안전·보건표지 및 안내서 제작·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현장의 특성과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국적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된 농작업 안전·보건표지와 위험 예방 안내서를 제작·보급할 수 있다.

② 농업경영주는 농작업 환경 내 유해·위험 장소 등에 대한 안전

- 보건표지를 농업인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농업경영주의 농작업 정보 제공) ① 농업경영주는 농업근로자가 농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작업의 내용 및 작업방법
2. 농업기계·기구 및 농약 등의 사용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3. 작업장소 및 기상상황 등 작업환경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4. 해당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 및 그 예방방법
5. 사고 발생 시 작업중지, 대피 및 비상연락 등 대응방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어 번역본, 시각 자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맞춤형 자료와 수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③ 농업근로자가 농작업 관련 위험·유해요인을 인지한 경우 농업경영주에게 즉시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주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농작업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농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위험 및 건강장해 요인으로부터 농업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장비 보급·교체, 안전·보

건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사용에 의한 위험
2. 회전체 등에 의한 협착사고 위험
3. 질식, 중독 등 밀폐 공간 사고 위험
4. 농업시설·기구 관련 추락 및 낙상사고 위험
5. 전기설비 취급에 따른 사고 위험
6. 폭염·한파 등 극한 기후에 따른 온열·한랭질환 건강장해
7. 유기·무기 분진 및 농약 살포에 따른 호흡기·신체 건강장해
8. 그 밖에 농작업에 의한 사고 및 안전·보건 위험

② 농업경영주는 제1항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농작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조직 및 운영체계

제24조(농업인안전보건센터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업 재해 예방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농업

인안전보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업인안전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작업재해 예방 사업의 기획·운영
2. 농작업재해 예방지도·기술보급
3. 농작업재해 예방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관리
4. 농작업 안전·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을 위한 기술지원
5. 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원
6. 농작업재해 예방 교육·홍보 관련 시설의 운영
7. 농업인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국내외협력
8. 그 밖에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안전보건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농작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은 제24조에 따른 농업인안전보건센터와 협력하여 농작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전담인력의 배치·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제26조(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로 위촉하여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작업 위험요인의 조사·진단 지원
2. 농작업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지도
3. 농작업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지원
4. 농작업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 개선 지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의 위촉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포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인 등의 안전·보건 증진 및 농작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예산의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작업재해 예방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작업재해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계획의 수립, 위원회 및 협의체의 구성, 농업인안전보건센터의 지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